

■ 관련법령-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법 제24조, 제25조, 시행규칙 제14조)

-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 등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 완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 증축·용도변경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완공일 또는 건축물대장에 용도변경사실 기재한 날
- 양수, 경매 등으로 권리를 새로 취득한 경우 : 소유권 취득일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 받은 날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 :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거나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 :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업무대행 종료일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안성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	공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 이거나 층고가 120m 이상 ○ 연면적이 10만㎡이상 ○ 50층 이상이거나(지하층 제외) 높이 200m이상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면적 15,000㎡이상 ○ 층수 11층 이상 ○ 가연성가스 1천톤 이상 ○ 30층 이상이거나(지하층 제외) 높이가 120m이상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의 물분무등 설치 시 제외) ○ 가연성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취급 ○ 지하구 ○ 주택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문화재보호법 국보 또는 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주택전용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국공립 및 사립학교 ○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기타 공공기관 * 소화기, 비상경보설비만을 설치하는 공공기관 제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 2·3급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만 가능

- 연기사유 : 강습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 신청기간 : **선임 기간(30일) 이내**
- 장 소 : **안성소방서 민원실 방문 신청(안성시 미양로 855 ☎ 031-678-4323)**
- 구비서류 : 선임연기신청서,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신고 의무 관련 처벌규정

-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이하 벌금**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교육

- 내 용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대행업체를 통해 선임 시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벌 칙 : **실무교육 미수료 과태료 5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정지**
- 신 청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a.or.kr) ☎(031)257-0131~3

■ 관련법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신고(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6조)

- 건축물 신축, 증축, 대수선·용도변경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는 경우 : 완공일 또는 사용승인일
 - 양수, 경매 등으로 권리를 새로 취득한 경우 : 소유권 취득일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선임 안내 받은 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 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 :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자를 **선임**하고, **14일 이내**에 **안성소방서에 신고**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
 - ⇒ 300세대 마다 보조자 1명 추가 선임
-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마다 보조자 1명 추가 선임
-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사용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이고 24시간 상시근무 숙박시설 제외)- 야간,휴일에 이용되지 않을 시 소방서장이 확인한 경우 제외
 - ⇒ 보조자 1명 선임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가능자

- 특급·1급·2급·3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사람
- 특급·1급·2급·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수료자
-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및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자격)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관련 업무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 연기사유 :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않을 경우
- 신청기간 : 선임 기간(30일) 이내
- 장 소 : **안성소방서 민원실 방문 신청(안성시 미양로 855 ☎ 031-678-4323)**
- 구비서류 : 선임연기신청서,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및 선임신고 의무 관련 처벌규정

-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이하 벌금**
-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이하 과태료**

구분	선임자격
특급	<p>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p> <p>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p>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p> <p>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p>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p> <p>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p>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p> <p>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